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3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이개호·오세희·조인철

박희승 • 이언주 • 민형배

정진욱 • 이정문 • 박수현

서삼석 • 이건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수준 향상, 인구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반려동물 지위의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과거 펫푸드, 의료 등의 일부 분야에 그치던 반려동물 산업은 펫보험, 생체기술 연계, 사물인터넷,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되며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반려동물 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이는 '동물 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반 려동물 산업을 육성 ·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산업을 정의하고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함 (제2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및 혁신성 증진을 위해 반려 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반려동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반려동물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두도록 함(제8조, 제10조, 제12조).
- 라. 반려동물사업자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개선 건의 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1 조).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우수반려동물업체,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15조, 제20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사. '주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 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은 허가업으로 규정함(제21조).
- 아. '보조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미용업, 반려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전시업은 등록업으로 규정함(제25조).
- 자.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 반려 동물식품업, 반려동물의료·돌봄서비스업, 반려동물기술업은 신고업으로 규정함(제26조).
- 차.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반려동물중개업 준수사항을 규정함(제31 조제4항).
- 카. 반려동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40조).
- 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근 거를 마련함(제43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 려동물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 물을 말한다.
 -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구분한다.
 - 가. 주산업: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전문중개 업, 반려동물판매업 및 반려동물장묘업
 - 나. 보조산업: 반려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미용업, 반려동물운송 업 및 반려동물전시업

- 다. 연관산업: 반려동물식품업, 반려동물의료·돌봄서비스업 및 반려동물기술업 등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 및 서비스업
-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반려동물기업"이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5. "이력관리"란 반려동물의 출생·수입·수출, 중개, 양수·양도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 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산업의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반려동물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지원 및 혁신성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 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적 목표
 - 2. 반려동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 3.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 4.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육성 및 효율적 활용계획
 - 5. 반려동물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 6.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 7.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 8.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 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반려동물산업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위원회) ①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위촉하는 공무원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람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형법 」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있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 2.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체험 사업의 실시
 -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동물산업육성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 2.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국제교류
 - 3. 반려동물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산업
 - 4. 반려동물산업 관련 교육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반려동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의 설립·운영) ① 반려동물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 2.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3.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반려동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의 사육·보건 관리, 질병, 장묘정보 등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반려동 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반려동물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구축·운영, 정보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13조(창업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동물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 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반려동물업체를 우수반려동물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기술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재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반려동물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 기술혁신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사업자의 다음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사업자의 반려동물생 산, 수출·입, 중개, 판매, 장묘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반려동물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제17조(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및 운송의 현대화 지원)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 사 육·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 개선,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이하 "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 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반려동물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 동물기업 간 협력에 의한 반려동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반려동물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 · 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지에 대하여 공정거래

-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 제20조(해외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반려동물사업자의 반려동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은 해외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반려동물산업 관리

- 제21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반려동물생산업
 - 2. 반려동물수출입업
 - 3. 반려동물전문중개업

- 4. 반려동물판매업
- 5. 반려동물장묘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①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 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입업 또는 반려동물판매업의 허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맹견 취급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이하 "맹견취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 ③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 ④ 맹견 취급을 위한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입업 또는 반려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공설반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 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반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반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반려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제25조(영업의 등록)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위탁관리업
 - 2. 반려동물미용업
 - 3. 반려동물운송업
 - 4. 반려동물전시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영업의 신고)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 관련 상품제조업 및 서비스업
 - 2. 반려동물식품업
 - 3. 반려동물의료·돌봄서비스업
 - 4. 반려동물기술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5.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6. 이 법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28조(영업승계)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5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家)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영업자는 반려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반려동물을 처리한 후 그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려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처리계획서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것
 - 2.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 4. 반려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 관할 것
 - 5.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 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 6. 반려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 8.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 10. 등록 및 신고대상반려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 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 12.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각 영업장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장별 공간분리를 시행할 것
- ② 반려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 할것
-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반려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3.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고 및 반려동 물 개체 특성에 따른 산차수 제한을 준수할 것
- ③ 반려동물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반려동물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신고할 것
- 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반려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④ 반려동물중개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제40조에 따른 개체식별 번호가 부여된 부모견에서 태어난 반려동물만을 중개할 것
- 반려동물중개업자는 중개한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기 별로 보고할 것
- 3. 중개되지 아니한 반려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 ⑤ 반려동물판매업자(반려동물생산업자 및 반려동물수입업자가 반려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 한다)하지 아니할 것
- 2.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반려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 3. 제40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반려동물만을 판매하고, 그 이력사항을 판매계약서에 기재할 것
- ⑥ 반려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 할 것
- 2. 등록대상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할 것
- 3.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32조(등록대상반려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반려동물생산업

- 자, 반려동물수입업자 및 반려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반려동물 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반려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33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반려동물생산업자, 반려동물수입업자 및 반려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 래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반려동물의 거래내역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제34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제35조(교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내용, 시기, 이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한 경우
- 2.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 5. 제21조제3항 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21조제4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4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 8.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9. 제3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영업소를 폐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반 려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 인 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 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반려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 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 제3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부착
-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반려동물학대 방지 등을

-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반려동물산업 종사자,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 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아니할 것
- 2.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소유자 등이 자기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호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물 보호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반려동물보호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40조(반려동물 이력관리) ① 반려동물 소유자, 반려동물 주산업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개체식별을 위한 기술적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반려동물에 부여된 개체식별장치를 위·변조 또는 때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개체식별장치를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개체식별장 치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반려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수출, 양도·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반려동물업체의 지정의 취소
 - 3.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 쇄명령
-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있다.

- 제4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調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동물 관련 분야 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산업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는 반려동물 산업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⑦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5. 제24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다른 변경신고를 한 자
- 5. 제31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 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 용하게 한 영업자
- 6. 제31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 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영업자
- 7. 제36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8.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 9.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 2. 제3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 3. 제31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31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 2.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과태료) ① 제3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장별 시설 및 인

- 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 4.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 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 5. 제3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 6. 제31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 7. 제3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4항 단서 또는 제2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 4. 제31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 5. 제31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 및 신고대상반려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 6. 제31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반려동 물을 사용한 영업자
- 7. 제31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 8. 제31조제7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 9. 제33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반려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 10. 제3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